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3. 8.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호
----------	------

제출연월일 : 2021. 3. 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다자녀가정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6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촌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2013년 9월 양촌자연휴양림 개장이후 변동이 없어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시설사용료 일부 인상하고, 신규 숲속의 집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조례 반영

- 1) 국가유공자 관련 대상자 중 누락된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7조제10호의2,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
- 2)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관련 조문 추가 (안 제8조제3항제4호, 제5호추가)
-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3) 위약금 경감을 위한 조문 수정(안 제10조제2항제2호~제5호)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위약금 면제 대상 확대 및 구체화 조문 신설(안 제10조제2항제6호)
- 5)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이용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제4항)
- 6) 운영자 귀책 위약금 지급을 위한 조문 신설(안 제10조의2)

나. 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 인상 및 신규시설 요금책정(안 제4조 별표2)

다. 현재 운영중인 글램핑장 사용기준 인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
(안 제4조 별표2) (현행 6인 → 변경 4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2. 3. ~ 2021. 2. 23.(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산림자원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7호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를 각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할 수 있다.” 를 “면제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의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의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숙박료의 30

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용 예약일 2~4일전까지 취소 시: 90퍼센트 환불

6.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환불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납부 대행서비스에 의해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반환일정에 따른다.
-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 지급)

- ① 휴양림 시설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예약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1. 사용 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보상
3. 사용 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40퍼센트 보상
4. 사용 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60퍼센트 보상
5. 사용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보상
6.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100퍼센트 보상
7. 사용 예약일 당일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0퍼센트 보상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산 립 공 원 과 장	김 종 진
	휴양시설관리팀장	박 순 영
	담 당 자	서 연 경 (041-746-6152)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사용 시간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주차료	소·중형자동차 (승용, 봉고차, 1톤이하 화물트럭)		1대/ 1일	2,000		시설물 이용자는 주차료 무료
	대형차량 (버스, 화물트럭)			4,000		
숲속의집 (일반)	26㎡(4인용)		1동/ 1일	75,000	5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29㎡(4인용)			75,000	50,000	
	36㎡(6인용)			120,000	80,000	
	60㎡(10인용)			160,000	100,000	
	74㎡(12인용)			200,000	140,000	
숲속의집 (프리미엄)	106㎡(10인용)		1동/ 1일	250,000	180,000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
	150㎡(15인용)			300,000	230,000	
숲속 휴양관	34㎡(5인용)			90,000	60,000	
다용도실	20인실	4시간	1실	50,000		
		8시간		100,000		
세미나실	50인실	4시간		100,000		
		8시간		200,000		
야외무대	공연장포함			1조/ 1일	50,000	
클럽핑장	4인용		1동/ 1일	130,000	10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숙박요금 감면 (숲속의집, 숲속휴양관, 클럽핑장)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사이버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자매결연도시·우호 교류도시주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관내 유치원· 초등·중·고등학생 수련활동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다자녀가정 구성원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6.(생략)</p> <p>7. "시설사용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8.~10.(생략)</p> <p>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p> <p>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p> <p>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p>	<p>제1조(목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p> <p>-----</p> <p>-----</p> <p>-----</p> <p>제3조(용어의 정의)-----</p> <p>-----</p> <p>1.~6.(현행과 같음)</p> <p>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p> <p>-----</p> <p>-----</p> <p>8.~10.(현행과 같음)</p> <p>제7조(입장료 면제)-----</p> <p>-----</p> <p>--면제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p> <p>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p> <p>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해당하는 사람</p>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 설>

11. ~ 18. (생략)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② (생략)

③ 1.~3. (생략)

<신 설>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10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유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 18.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3. (현행과 같음)

4.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1실(동)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 ② (생략)

1. (생략)

2. 사용 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

3. ~ 4.(생략)

5. 사용 당일까지 연락없이 불참시: 사용료의 50퍼센트 환불

<신 설>

<신 설>

<신 설>

1실(동)에 한한다.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용 예약일 4~2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

3. ~ 4.(현행과 같음)

<삭 제>

6.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환불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납부대행서비스에 의해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반환일정에 따른다.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제10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 지급)

① 휴양림 시설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예약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1. 사용 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보상

3. 사용 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40퍼센트 보상

4. 사용 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60퍼센트 보상

5. 사용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보상

6.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100퍼센트 보상

7. 사용 예약일 당일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0퍼센트 보상

현 행

[별표 1] (생략)

[별표 2] 시설 사용 요금 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사용 시간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주 차 료	소·중형자동차 (승용, 봉고차, 1톤이하 화물트럭)	1대/ 1일	2,000		시설물 이용자는 주차료 무료
	대형차량 (버스, 화물트럭)		4,000		
숙숙의집	26㎡(4인용)	1동/ 1일	70,000	5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
	29㎡(4인용)		70,000	50,000	
	36㎡(6인용)		100,000	70,000	
	60㎡(10인용)		130,000	90,000	
	74㎡(12인용)		150,000	100,000	
숙숙의집 숙 휴 양 관	34㎡(5인용)		80,000	60,000	
다용도실	20인실	1실	4시간	50,000	
			8시간	100,000	
세미나실	50인실	1실	4시간	100,000	
			8시간	200,000	
야외무대	공연장포함	1조/ 1일	50,000		
클럽펍장	6인용	1동/ 1일	120,000	10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숙박요금 감면 (숙숙의집, 숙숙휴양관, 클럽펍장)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사이버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자매결연도시·우 호교류도시주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개 정 안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표 2] 시설 사용 요금 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사용 시간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주 차 료	소·중형자동차 (승용, 봉고차, 1톤이하 화물트럭)	1대/ 1일	2,000		시설물 이용자는 주차료 무료
	대형차량 (버스, 화물트럭)		4,000		
숙숙의집 (일반)	26㎡(4인용)	1동/ 1일	75,000	5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
	29㎡(4인용)		75,000	50,000	
	36㎡(6인용)		120,000	80,000	
	60㎡(10인용)		160,000	100,000	
	74㎡(12인용)		200,000	140,000	
숙숙의집 (프리미엄)	106㎡(10인용)	1동/ 1일	250,000	180,000	
	150㎡(15인용)		300,000	230,000	
숙숙의집 숙 휴 양 관	34㎡(5인용)		90,000	60,000	
다용도실	20인 실	1실	4시간	50,000	
			8시간	100,000	
세미나실	50인 실	1실	4시간	100,000	
			8시간	200,000	
야외무대	공연장포함	1조/ 1일	50,000		
클럽펍장	4인용	1동/ 1일	130,000	10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숙박요금 감면 (숙숙의집, 숙숙휴양관, 클럽펍장)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사이버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자매결연도시·우 호교류도시주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다자녀가정 구장권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 시설이용료 인상 및 “숲속의집(프리미엄) 10인용 등” 신축에 따른 세입의 증가
- ◎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인건비등 세출 증가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설사용료 등 수입 발생에 따른 세입증가

나. 추계결과 :

○ 세입증가분 : 269,400천원

◇ 신규 숲속의 집 6동 시설 사용료 수입(219,000천원)

- 110일(12개월 숙박일수) × 250,000원(1박, 성수기) × 6동 = 165,000천원
- 50일(12개월 숙박일수) × 180,000원(1박, 비수기) × 6동 = 54,000천원

◇ 기존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인상 수입(50,400천원)

- 4인용 (5,000원 × 4동 × 150일) = 3,000천원
- 6인용 (20,000원 × 3동 × 150일) = 9,000천원
- 10인용 (20,000원 × 2동 × 150일) = 6,000천원
- 12인용 (50,000원 × 2동 × 150일) = 15,000천원
- 5인용 (10,000원 × 7실 × 100일) = 7,000천원(휴양관)
- 글램핑장 (10,000원 × 8동 × 130일) = 10,400천원

○ 세출증가분 : 269,400천원

◇ 휴양림 운영관리(신규 6동) 인건비 : 195,840천원

- 휴양림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 81,600원 × 8명 × 300일(1년) 195,840천원

◇ 휴양림 일반운영비(신규 6동) : 66,000천원

- 휴양림 운영 공공요금등 : 5,500,000원 × 12월 = 66,000천원

◇ 휴양림 시설유지관리비(신규 6동) : 7,560천원

- 휴양림 시설유지관리비 : 630,000원 × 12월 = 7,560천원

3. 작성자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269,400	269,400	269,400	269,400	269,400	1,347,000	
시 설 사 용 료	269,400	269,400	269,400	269,400	269,400	1,347,000	
세 출	269,400	269,400	269,400	269,400	269,400	1,347,000	
인건비(101) 기간제근로자보수 (04)등	195,840	195,840	195,840	195,840	195,840	979,200	
일반운영비(201) 공공운영비(02)	73,560	73,560	73,560	73,560	73,560	367,800	
재원조달	269,400	269,400	269,400	269,400	269,400	1,347,000	
자체 수입	소 계	269,400	269,400	269,400	269,400	269,400	1,347,000
	지방세						
	세외수입	269,400	269,400	269,400	269,400	269,400	1,347,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생략)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0. 11. 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일부개정]

<별표 II>

품 목 별 해 결 기 준

26. 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 (2-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논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 알림

1. 제도개선총괄과-3429(2019.7.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제47조에 따라 일선행정에서 국민고충을 야기하거나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 제개정을 제안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 1부.
2. 제안과제별 제도개선 권고문 11부. 끝.

논 산 시 장

수신자 논산시의회의장, 참여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체육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산림공원과장, 도로교통과장, 맑은물과장

주무관 감사팀장 청렴감사실장 전결 2019. 7. 25.

협조자

시행 청렴감사실-4684 (2019. 7. 25.) 접수 산림공원과-10104 (2019. 7. 25.)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http://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5102 팩스번호 041-746-5109 / atom1963@korea.kr / 비공개(5)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논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및 개정 재요청

1. 道 교육법 무담당관-8893(2020. 6. 22.)호, 15587(2020. 10. 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①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 미비 ②감면대상자 중 일부 누락 규정의 문제로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 각 지자체 보훈·복지 업무 담당 부서에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붙임 1)"과 "정비 과제 목록(붙임 2)"을 통보하였습니다.(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3580, 충청남도 사회복지과-8814)
4. 해당 정비과제 정비율은 **21년(20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예정**이오니, 해당 정비 과제들의 대상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1부
2.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 목록 1부
3. 국가보훈처 공문(복지정책과-3580, 2020. 6. 5.) 1부. 끝 .」

2 요금감면 대상 및 범위

1. 감면의무

-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

※ 각 법령 소관부처(국방부, 복지부, 보훈처) 및 법제처 해석례(17-0258)도 같은 입장

법 제처 17-0258 해석례, 2017. 8. 2.

...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의사상자법 제15조에 따라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함),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함), 국공립 수목원 및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일반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함) 및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일반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입장료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사상자법 제15조 및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감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면 여부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감면율 기준을 법령에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논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 권고(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617(2020.6.17.호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을 위한 제도개선을 '붙임 1'과 같이 권고하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붙임 2'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2020. 7.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는 '붙임 3'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인 2021. 7.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제도개선 의결서 1부
 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양식)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논 산 시 장

수신자 산림공원과장, 논산시공공시설사업소장

주무관 주무관 조사팀장 대결 2020. 6. 18. 청렴감사실장 전결

협조자

시행 청렴감사실-3857 (2020. 6. 19.) 접수 산림공원과-9670 (2020. 6. 19.)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http://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5102 팩스번호 041-746-5109 / heyday28@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논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례 정비사항(감면시설 여부 등) 협조 요청

1.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1747(2020. 3. 13.)호 및 道 교육법무담당관-4110(2020. 3. 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 국공립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법령상의 대상자를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는 등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파악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와 '2020년도 일반협업과제'로 추진 중)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 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3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각 시설 운영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 시설인지 여부 및 감면 대상 시설 종류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조례 정비 목록(붙임 1)*을 2020. 3. 23.(월)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별 감면대상시설 해당여부, 감면대상 시설 종류 기재(목록 외 대상 법규 존재 시 추가 가능)

- 붙임 1.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지자체 조례 정비 목록 1 부.
2. 조례 정비 관련 참고 기준 1 부. 끝.

논 산 시 장

수신자 열린홍보실장, 마을자치분권과장, 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체육과장, 산림공원과장, 희망마을건설과장, 논산시공공시설사업소장

★주무관 의회법무팀장 참여예산실장 전결 2020. 3. 17.

협조자

시행 참여예산실-2730 (2020. 3. 17.) 접수 산림공원과-4513 (2020. 3. 18.)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http://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5083 팩스번호 041-746-5079 / ahnsd914@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적용여부 판단 기준(조례)

1. 운영 주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2. 시설의 성격

- 국공립 공원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3. 기타

적용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해당시설의 기본 이용료(입장료·관람료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타 부가된 시설·서비스 사용료 등이 모두 감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관련 법령해석례(법제처 14-0366)

국가유공자에우법에 따라 면제되는 국공립 공원의 이용료는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연공원법」에서 그 징수를 허용하고 있는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